

# 자주 묻는 질문들(FAQ)

##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연례 반기 진행 경과 보고서 양식

**VAWA** 효율성 주도성 측정:  
TA/보고서 양식 내용 교육 및 연수:  
전화: 1-800-922-VAWA (8292)  
이메일: [vawamei@maine.edu](mailto:vawamei@maine.edu)

### 목차

지역 공동체 협력 소통 관련 FAQ.....	1
편의 제공 관련 FAQ.....	1
피해자 복지 서비스 관련 FAQ.....	1
주택 공급 관련 FAQ.....	3
체류 만료 후 정착지 또는 체류 기간 관련 FAQ.....	4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보조금 수령인 자원 정보:

VAWA MEI 웹사이트 홈페이지:

<https://www.vawamei.org/>

VAWA MEI 웹사이트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페이지:

<https://www.vawamei.org/grant-program/transitional-housing-program/>

## 지역 공동체 협력 소통 관련 FAQ

**Q: 공식 CCR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14번 질문 항목을 보고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이 항목을 보고하기 위해, 공식 CCR 지역 주민 회의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CCR 항목은 귀하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직원들이 귀하의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귀하의 지역 공동체 내의 기관/단체와 가진 모든 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항목입니다.

## 편의 제공 관련 FAQ

**Q: 10번 질문의 “편의 제공”으로 보고된 임차 세대는 편의 제공이 필요한 의뢰인들이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가 없나요?**

**A:** 없습니다. 10번 질문에 대해서는, 보고 기간 동안, 편의 제공이 가능한 임차 세대에 해당 시설을 필요한 개인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보고합니다. .

**Q: 16번 질문, 편의 제공과 보안 항목에서 “피해자 복지 서비스”와 “주택 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6번 질문의 “피해자 복지 서비스”와 “주택 공급”의 차이는 보조금 기금이 특정 피해자/생존자의 편의 시설 개선 또는 임차 세대 개선에 지출되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6번 질문에, 만일 귀하가 휴대 전화를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체류 만료 후 전화기를 가지고 간다면, 이는 피해자 복지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체류 만료 후, 휴대 전화를 임차 세대에 두고 간다면, 이는 주택 편의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 피해자 복지 서비스 관련 FAQ

**Q: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의 피해자/생존자 가입 승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A:** 이는 귀하의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가입 승인을 귀하가 속한 기관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관들은 의뢰인이 거주를 완료하고 지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후에만 프로그램 가입을 승인합니다. 일부 기관은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의뢰인의 가입을 승인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생존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OVW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별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OVW 프로그램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추가 안내를 받으십시오.

**Q: 보조금으로 공급되는 과도기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이 과도기 주택 공급 보조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A:** 그렇습니다. 해당 피해자/생존자 또한 그들이 요청한 보조금 기금 지원 복지 서비스 (과도기 주택 공급)를 모두 이용한 것으로,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우리가 피해자/ 생존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부만 이용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생존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수혜자가 보조금 기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귀하의 기관이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한 것이므로, 일부만 제공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Q: 우리가 보조금 기금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임대 중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임차 세대가 없는 경우, 우리가 제공하는 보조금 기금으로 제공하는 과도기 주택 공급 서비스를 요청하는 추가 피해자들은 "서비스 비수혜자"로 보고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해당 추가 피해자/ 생존자는 귀하가 제공하는 모든 임차 세대가 임대중인 관계로 요청한 보조금 기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비수혜자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21번에 해당 피해자들을 이용 가능한 공급 주택이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비수혜자로 보고하고, 22번 질문에서 "프로그램이 최대 수용치에 도달하였음"으로 그 사유를 보고 하십시오.

**Q: 우리 프로그램이 소유/ 임대하고 있는 임차 세대들이 모두 임대 중이어서 요청한 보조금 기금 제공 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나, 지원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 생존자를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A:** 과도기 주택 공급 보조금 기금은 귀하의 프로그램이 과도기 주택 공급 임차 세대를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생존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기금만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해자/ 생존자는 서비스 비수혜자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1번 질문에 해당 생존자, 자녀 및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한 공급 주택이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비수혜자로 보고하고, 22번 질문에서 "프로그램이 최대 수용치에 도달하였음"으로 사유를 보고 하십시오.

**Q: 보조금 기금으로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임차 세대의 과도기 주택 공급 서비스를 신청하고, 현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생존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A:** 해당 피해자/ 생존자가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접수되어 있고, 피해자가 임차 세대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귀하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가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합니다. 아울러, 21번 질문에는 해당 생존자, 자녀 및 기타 부양 가족이 이용 가능한 공급 주택 부족으로 일부 서비스만 이용한 것으로 보고하십시오.

**Q: 입주 신청서 및 공급 주택 설문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보고 기간 내에 신청한 임차 세대로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 생존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A:** 이러한 경우, 해당 피해자/ 생존자가 임차 세대로 입주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만일 귀하의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이 보조금 기금으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고, 입주 가능한 임차 세대를 구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를 서비스 비수혜자로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21번 질문에는 해당 생존자, 자녀 및 기타 부양 가족을 보고해야 합니다.
- 만일 해당 피해자/ 생존자가 과도기 주거 공급 프로그램에 가입 승인이 되어 있고, 입주할 임차 세대(대개 임대료 보조금 지원)를 구하는 동안, 귀하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하십시오. 아울러, 21번 질문에는 해당 생존자, 자녀 및 기타 부양 가족을 보고해야 합니다.

- 만일 피해자/ 생존자가 요청한 모든 지원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임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입주 시기가 다음 보고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는 온전히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합니다.

**Q: 20번 질문에서, 보고 기간 (6월 또는 12월 말)의 마지막 주에 프로그램 가입이 승인되어, 직후, 보조금 기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 기관이 과도기 주택 공급 기금을 제공하는 기간은 다음 보고 기간의 첫 번째 주 (1월 1일 또는 7월 1일이 있는 주간)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이러한 경우, 피해자/ 생존자는 그들이 요청한 모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과도기 주택 공급 서비스 청구서는 보고 기간 마감일 익일에 지급되기는 하나, 서비스 이용한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Q: 대기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 생존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만일 피해자/ 생존자가 과도기 주택 공급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귀하의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대기자 명단에 추가되었다면, 해당 피해자/ 생존자는 서비스 비수혜자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거주할 세대가 없으나, 세대가 생길 때까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들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기자 명단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OVW 프로그램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십시오.

## 주택 공급 관련 FAQ

**Q: 9번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 보고 양식 질문 항목 중에서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은 몇 번입니까?**

**A:** 9번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 25번, 31번, 32번, 33번, 34번 및 35 번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쿠폰 유형은 무엇입니까?**

**A:** 본 보고서 양식에 기재할 수 있는 쿠폰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쿠폰 유형은 제 3자 소유 임차 세대(들)에 대한 임대 지원금/ 임대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쿠폰입니다. 임대 지원금/ 쿠폰은 9번 질문과 26번 질문에 보고합니다.

두 번째 쿠폰 유형은 피해자/ 생존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한 지원 서비스 지급용입니다.

지원 서비스 쿠폰은 30번 질문에 보고합니다.

**Q: 임대료 보조금/ 쿠폰은 고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A:** 쿠폰/ 임대료 보조금은 임대주나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 3자 소유 임차 세대의 임대는 의뢰인의 명의로 계약합니다.

**Q: 21번 질문의 경우, "이용 가능한 공급 주택의 부족"은 어떤 경우입니까?**

**A:** 이용 가능한 주택 공급의 부족은, 피해자/ 생존자가 수 개월 동안 임차 공간을 구하고 있으나 마땅한 공간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Q: 26번 질문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소유한 임차 세대에 대한 모기지 납부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26번 질문에 모기지 납부금액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양식에는 프로그램 소유의 임차 세대에 대한 모기지 납부 금액을 보고하는 질문은 없습니다.

**Q: 26번 질문에서, 주택 지원에 긴급 숙박이 포함됩니까?**

**A:** 아닙니다. 긴급 숙박은 OVW 과도기 주택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보조금 기금 제공 서비스가 아닙니다.

**Q: 31번 질문에서, 안내문에 있는 오타는 무엇입니까?**

**A:** 31번 질문에서: "체류 만료 후 목적지"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31번부터 38번 질문까지는 9번 질문에 설명되어 있는 바대로, 기금으로 주택 공급 임차 세대를 지원하는 수령인들만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실제로 "31번부터 35번 질문까지"라고 기술되어야 합니다. 36번부터 38번까지 질문은 보조금 기금으로 후속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수령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체류 만료 후 정착지 또는 체류 기간 관련 FAQ

**Q: 피해자/ 생존자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영구 거주지 선택"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A:** 예, 맞습니다.

**Q: 피해자/ 생존자가 범죄를 자행한 가해자에 돌아가 함께 거주하기를 선택한 경우, "영구 거주지 선택" 항목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A:** 예, 맞습니다.

**Q: 33번 질문과 35번 질문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A:** 체류 기간은 피해자/ 생존자가 귀하의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에서 체류한 전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6개월 보고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령, 귀하의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11개월간 체류한 사람이 있는 경우, 33번 질문에 프로그램 만료를 11개월로 보고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경우에는 35번 질문에 11개월로 보고합니다.

**Q: 33번 질문과 35번 질문 모두 동일한 피해자/ 생존자에 대해 보고합니까?**

**A:** 아닙니다. 33번 질문에서는 보조금 기금으로 지원하는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 체류를 만료한 사람들의 체류 기간을 보고합니다. 35번 질문에서는 보조금 기금으로 지원되는 과도기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종료한 사람들의 체류 기간을 보고합니다.

**Q:** 체류 기간 개월 수를 보고할 때, 개인 당으로 기재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6명이 6개월간 체류한 경우, 6명의 피해자/ 생존자를 "12" 개월에 해당하는 줄에 모두 기재해야 합니까?

**A:** 예, 맞습니다. 이는 33번 질문에 해당됩니다: "체류 기간/ 만료"와 35번 질문: "체류 기간 /종료".

**Q:** 우리 기관이 보조금 기금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과도기 주택 공급 지원금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피해자/ 생존자가 우리 프로그램 이용을 만료하는 경우, 그들의 목적지를 보고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OVW 과도기 주택 공급 보조금 기금으로 과도기 주택 공급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만료 후 목적지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9번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 25번, 31번, 32번, 33번, 34번 및 35번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